

Ⅲ. 예산총칙



제1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10,654,809,000	319,644,270
일 반 회 계	9,332,000,000	279,960,000
특 별 회 계	1,322,809,000	39,684,270
기 타 특 별 회 계	1,322,809,000	39,684,270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639,329,000	19,179,870
치 수 사 업	8,702,000	261,060
광 역 교 통 시 설	12,010,000	360,300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87,082,000	2,612,46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68,126,000	2,043,780
낙 후 지 역 발 전	5,700,000	171,000
소 방 안 전	501,860,000	15,055,800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9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에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IV.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 감 비 율
계	10,654,809,000	9,635,500,000	1,019,309,000	10.6
일 반 회 계	9,332,000,000	8,445,000,000	887,000,000	10.5
특 별 회 계	1,322,809,000	1,190,500,000	132,309,000	11.1
기 타 특 별 회 계	1,322,809,000	1,190,500,000	124,480,000	10.5
의료급여기금운영	639,329,000	613,450,000	25,879,000	4.2
치 수 사 업	8,702,000	4,910,000	3,792,000	77.2
광 역 교 통 시 설	12,010,000	7,020,000	4,990,000	71.1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87,082,000	93,340,000	△6,258,000	△6.7
학 교 용 지 부 담 금	68,126,000	49,290,000	18,836,000	38.2
낙 후 지 역 발 전	5,700,000	7,000,000	△1,300,000	△18.6
소 방 안 전	501,860,000	415,490,000	86,370,000	20.8